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
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송미령 (농림축산식품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산불 발생 시 산림과 인접한 건축물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, 건축물과 인접한 입목에 대해서는 허가·신고없이 임의로 벌채할 수 있도록 하여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건축물 인접 입목에 대한 임의벌채 허용(안 제43조)

- 건축물에 인접하여 산불 발생 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하는 경우 허가·신고없이 임의로 벌채할 수 있도록 개정

4. 주요토의과제 : 없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3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(가설건축물 및 적법한 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건축한 건축물을 제외한다. 다만,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임시숙소 또는 같은 항 제16호에 따라 임시숙소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포함한다)에 연결되어 있어 산불 발생 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하는 경우(건축물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25미터 이내의 입목으로 한정한다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항제2호 중 “제9호까지의”를 “제10호까지의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3조(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) 법 제36조제8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 고 없이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43조(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) -- ----- ----- -----.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9.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(가설건축물 및 적 법한 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건 축한 건축물을 제외한다. 다만,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5조제5항 제8호에 따른 임시숙소 또는 같 은 항 제16호에 따라 임시숙소 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포함한다)에 연접되어 있어 산불 발생 시 피 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입목을 산 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하 는 경우(건축물 외곽 경계선으 로부터 25미터 이내의 입목으로 한정한다)
9. (생 략)	10. (현행 제9호와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산림청 산불방지과	
연 락 처	(042) 481 - 4255